

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	비고
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(대통령령 제30256호, 2019. 12. 24) 제87조(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) ① 삭제 ② 건설기술용역, 건축설계(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「건축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), 공사감리(「건축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)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. 1. <u>공동이행방식인 경우: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. 다만,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.</u> 2. (생략) ③ ~ ⑤ (생략)	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(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-39호, 2020. 1. 20) 제87조(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건축설계(「건축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), ----- ----- -----. 1. <u>공동이행방식인 경우: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.</u>----- ----- -----해당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원-----. 2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	

※ 주요내용

- 가.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 변경(제87조 제2항)
공동이행방식의 경우 **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**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나.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정비(별표 8)
 - 1) 벌점의 산정·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**합산방식**으로 변경
 - 합산벌점 : 해당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의 최근 2년간의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(반기벌점 :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해당 반기에 받은 모든 벌점의 합)
 - 누계평균벌점 : 2년간 **평균벌점의 합** ÷ 2 (평균벌점: 벌점 합 ÷ 점검 받은 현장 수)
 - 2) 벌점 측정기준 등 별표 8에서 사용하는 **용어의 뜻을 규정**
 - 3) 벌점 측정기관에서 책정한 벌점에 대해 벌점 부과대상자가 제출하는 의견을 **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이 검토**하도록 규정
 - 4) ‘건설업자’를 ‘건설사업자’로 ‘건설기술용역업자’를 ‘**건설기술용역사업자**’

※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(알림마당-법령소식)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 바랍니다.